

2.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의 처리
 3.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의사진행
 4.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
 5.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의 처리
 6. 의안문서의 보존·관리
 7. 소관자치법규의 정비
 8.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9. 의안·청원 관련자료의 수집·연구·검토에 관한 사항
 10. 각종 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 제 6 조(직원의 파견요청) 의장은 교육위원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제5조중 “주무계장”을 “의정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중학교(남부)의 강서중학교의 명칭란중 “강서중학교”를 “세일중학교”로 하고, 영등포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영등포여자중학교”를 “영원중학교”로 하며, 중학교(강동)의 풍납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풍납여자중학교”를 “풍성중학교”로 한다.

별표 5중 특수학교의 서울정문학교란 다음에 서울광진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수학교

3	서울광진학교	광진구 구의동 587-52
---	--------	----------------

별표 7중 유치원(서부)의 서울상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북성유치원 및 서울용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남부)의 서울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영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강동)의 서울가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세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서울잠신초등학

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성동)의 서울양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사근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치원(서부)

7	서울북성유치원	서대문구 북아현동 215
8	서울용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마포구 대흥동 51

유치원(남부)

8	서울영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3
---	----------------	----------------

유치원(강동)

8	서울세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송파구 오륜동 89-23
9	서울잠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송파구 잠실동 22-10

유치원(성동)

7	서울사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동구 사근동 291-5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명칭변경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중 직무분야 교육위원회 의안조사관란을 삭제하고, 학생수련담당관의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의 임용자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구분 직무분야	일반직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속기록 담당	7급상당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별정직 8급상당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8급상당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 한글속기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별정직 9급상당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9급상당	·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예비군중대장	6급상당	· 육군의 보병·포병·기갑·공병·정보·통신병과 출신의 예비역 중위 이상인 자		
학생수련담당	5급상당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 · 일반직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4년 이상인 자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후, 공공학생수련기관에서의 수련활동 지도경력 7년 이상인 자		
	6급상당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6년 이상인 자 · 일반직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학생수련기관의 수련활동 지도경력 2년 이상인 자		
	7급상당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일반직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학생수련기관의 수련활동 지도경력 2년 이상인 자		
	8급상당	· 교원자격증 소지자 ·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2년 이상인 자 ·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사 진 담 당	7급상당	·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사진학과 졸업자 ·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관련분야에 근무경력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자		
	8급상당	· 행정기관에서 당해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사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p>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별정직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p>	<p>한다.</p> <p>제4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p> <p>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부 칙</p> <p>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p>
--	--

[별표]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구분 직무분야	일반직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속기록 담당	7급상당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별정직 8급상당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8급상당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 한글속기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별정직 9급상당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9급상당	·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예비군중대장	6급상당	· 육군의 보병·포병·기갑·공병·정보·통신병과 출신의 예비역 중 위 이상인 자
학생수련담당	5급상당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 · 일반직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있는 자 ·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 4년 이상인 자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후, 공공학생수련기관에서의 수련활동 지도경력 7년 이상인 자
	6급상당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6년 이상인 자 · 일반직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후, 공공학생수련기관에서의 수련활동 지도경력 4년 이상인 자
	7급상당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일반직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학생수련기관의 수련활동 지도경력 2년 이상인 자
	8급상당	· 교원자격증 소지자 ·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 2년 이상인 자 ·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사 진 담 당	7급상당	·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사진학과 졸업자 ·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관련분야에 근무경력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자
	8급상당	· 행정기관에서 당해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사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1998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의안 번호	157	1998. 12 기획경제위원회